

폐기물관리 안내서



<http://www.seo.incheon.kr>

자원순환과

목 차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집	-----	p.1
I. 폐기물 배출자	-----	p.2
II.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p.11
III. 폐기물 처리업체	-----	p.13
IV.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p.23
□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	p.27
□ 행정처분 기준	-----	p.31
□ 벌 칙	-----	p.70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집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함.

I

폐기물 배출자

1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준수사항

- ▶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2항
- 조치사항 : 고발(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허가취소
- 위반사례
 - 00는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경기도 00시 00사업장등에서 수집·운반하여 온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가량을 00시 00동 00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 및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임.

2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필(사업장일반폐기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행정처분 : 과태료(3백만원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신고한 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는 관할구청에 폐수처리시설 가동시 월 평균 5톤의 폐수처리오니가 발생함을 신고 득하였으나 점검 결과 월평균(최근 6개월) 배출양이 15톤으로 신고한 양보다 200% 증가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임

■ 신고·확인 대상 폐기물 발생 사업장

구 분	관련법규	신고서식	작성대상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니(월평균500kg 이상) ②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③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페페인트, 페레카 (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③-2 폐석면(월평균 20kg 이상) ④ PCBs함유 폐기물 ⑤ 폐유독물 ⑥ 의료폐기물 ⑦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출시설 운영 : 폐기물 100kg/일 이상 배출 ②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폐기물 100kg/일 이상 배출 ③ 폐기물 300kg/일 이상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7호)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5톤이상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별지 제8호)	공동처리운영 기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별지 제7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 변경신고 대상 :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규 폐기물 배출	신규 폐기물 배출 (신규 신고 요건과 동일)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 이상 증가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 50% 이상 증가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처리방법 동일하고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 제외)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	-
폐기물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일련의공사 또는 작업 으로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구 분		처리기간	제출·구비서류
사업장 폐기물	최초신고	3일 또는 5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변경신고	3일 또는 5일	사업장폐기물변경배출신고서(원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필증(원본)
지정 폐기물	최초신고	5일	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또는 수탁확인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변경신고	5일	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필증(원본)
건설 폐기물	최초신고	3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변경신고	3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필증(원본)

3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준수사항

- ▶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 OO는 건설기계정비를 하면서 발생한 폐윤활유 및 폐유고상(기름장갑 및 기타 폐기물)을 폐기물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노천상에 방치한 사실임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 고상)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점검 당시 폐유(액,고상) 약 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25일 초과 보관)하여 70일간 보관한 사실임
 - ※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위반사례 3】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는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하여야 하나
 - 점검당시 생산공정 중 프레스 등에서 발생된 폐유(폐유압작동유, 폐윤활유통, 폐그리스통)등 약 00톤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함

【위반사례 4】

○ 위반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 부적정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6백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 00는 폐수처리 후 발생한 오니 000톤을 폐기물보관장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 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공터에서 야적 보관함

【위반사례 5】

○ 위반내용 :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00는 2009. △. △.경부터 폐수처리 후 발생한 오니 00톤을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2009. □. □. 점검일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임

【위반사례 6】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3백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일 현재 건설기계장비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윤활유 약 200리터 가량을 보관창고에 보관중임에도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임

4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준수사항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위탁 처리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 조치사항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OO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코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방지 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처리오니 약 25톤 가량을 2009. 0. 0.경 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에 위탁 처리한 사실임

II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등

준수사항

- ▶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미승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1천만원 이하)
※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조치명령)
- 위반사례
 - 00는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사업장에서 수집·운반하여 온 폐기물을 적정 처리 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인천 서구 00동 000-00번지 상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폐기물 20톤 가량을 무단 적치한 사실임.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폐기물수집·운반기준 위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폐기물처리금지1개월) 및 과태료(7백만원 이하)
※현행법상 :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2차:폐기물처리금지1개월)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폐축전지를 수집·운반코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을 수집·운반 시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9. △. △. 00시 소재 카센타에서 발생한 폐축전지와 고철 등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사실임.

Ⅲ

폐기물 처리업체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준수사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행정처분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OO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폐주물사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중간처리하는 곳으로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9. △.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부터 폐주물사 25톤을 인수하였으나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사실임.

2 폐기물 처리업 허가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1개월
- 위반사례
 - 00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폐합성수지를 파쇄하는 곳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처리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이 아닌 폐목재, 폐비닐 등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약 △△톤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

3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00는 목재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2009. 0월경부터 동년 △. △.까지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MDF, PB 등의 폐목재를 소각 처리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설치 운영중임을 확인함.

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행정처분 : 고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 설치검사 이후 최종정기검사일부터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목재와 폐종이 등을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온도기록지 미보존)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처리업체에 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이하)
- 위반사례
 - 00는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거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임의 폐기한 사실을 확인함

【위반사례 3】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자동온도기록계 고장 방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처리업체에 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이하)
- 위반사례
 - 00는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계측장비는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자동온도기록계가 노후 되어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사실임

5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준수사항

-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 행정처분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 00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에 대해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조업 중으로 2009. △. △.부터 2009. △. △. 점검당일까지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함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미이행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9. △. △△.경부터 동년 △. △△.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대장을 기록치 아니한 사실임.

6 폐기물 재활용 신고

준수사항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 변경신고 미필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3항

○ 행정처분 : 과태료(3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당초 신고한 인천 서구 △△동 00-00번지에서 인천 서구 □□동 000-00번지로 재활용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임.

7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17의2)을 지켜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처리금지1개월)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사업자는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점검당시 반입 받은 페플라스틱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 외부 장소인 인천 서구 00동 00-00번지상에 야적한 사실임.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
- 관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
- 행정처분 : 경고(2차:폐기물처리금지1개월) 및 과태료(1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OO는 관할 구청에 폐목재를 재활용코자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곳으로
 -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주의사항 등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일 현재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서 상에 폐기물재활용방법, 취급시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임.

IV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사항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1】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13조의2
- 행정처분 : 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2009. △. △.부터 동년 동월 △일까지 관할 구청에 임시보관 장소 승인 없이 인천 서구 00동 00-00번지 상에 건설폐기물 약 100톤 가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례 2】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미설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 3】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현행법상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 당시 동사업장의 허가부지가 아닌 00동 00-0번지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200톤 가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례 4】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행정처분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7백만원 이하
※**현행법상** : 경고(2차:영업정지1개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00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점검일 현재 차량 운행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회사명과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사실임.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준수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 위반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위반
- 관련 법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행정처분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 OO는 관할 구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폐기물의 종류 및 용역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임.

폐기물 배출업소·처리업체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폐기물배출사업장

주요 체크 사항	점검결과
1. 신고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상호, 소재지, 배출량(일반 50%, 지정 30% 증가), 처리방법, 새로운 폐기물 등 변경사항 발생	
○ 운반자·처리자 변경(지정폐기물의 경우)	
2.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 지붕·벽면·방지턱, 바닥 포장 및 파손 여부 확인 - 보관폐기물의 외부 누출 및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 조치 실시 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 - 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45일, 기타 60일, 3톤 미만 1년 내)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 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3.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4. 각종 서류	
○ 전자인계서 적정 입력 및 사용	
○ 폐기물장부 작성(전자인계서 작성시 해당 장부 면제)	

※ 매주 1회 이상 환경기술인이 점검·확인

폐기물처리업체·재활용신고

주요 체크 사항	점검결과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 처리(수집·운반)방법	
- 처리(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소재지·사업장명 등	
○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 -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3. 폐기물인계서 등에 관한 사항	
○ 인계서 적정 발급 여부	
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 위탁 여부	
○ 처리 및 재활용(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	
○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주요 체크 사항	점검결과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정기검사 실시 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 지붕·벽면·방지턱, 바닥 포장 및 파손 여부 확인 - 보관폐기물의 외부 누출 및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 조치 실시 여부	
○ 폐기물 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 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운반방법, 용기, 운반차량 등을 확인	
○ 운반차량의 적정성 여부 - 차량증 발급 여부, 바닥의 밀폐, 덮개비치, 처리업소명 기재여부 등	
○ 차량운행일지 확인	
○ 폐기물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준수 여부(3년 주기)	
○ 각종 대장 적정작성 및 보관여부	
○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매주 1회 이상 환경기술인이 점검·확인

행정 처분 기준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5	5	5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 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 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 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 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 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 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 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 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 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 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 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법 제68조			

한 경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2	50	70	100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법 제68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변경한 경우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러. 삭제 <2020. 5. 19.>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500	700	1,000

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100	200	300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500	700	1,000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6호	50 100	70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300 100 100 100	3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100	200	300

받은 경우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1호	지정 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3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시설·장비의 기준 일부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 기준의 2분의 1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기술요원 기준의 2분의 1 미만을 갖추지		경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 제13조의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4호	경고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의4 제6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1항제3호	지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1호	지정취소			
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부족한 경우					
4)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의5 제2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의5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5제2항제3호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p>마)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바)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p> <p>사)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지정취소</p> <p>지정취소</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7)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별표 5의8의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p>	<p>법 제17조의5제2항제4호</p>	<p>경고</p> <p>경고</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p>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p>	<p>법 제17조의5제2항제5호</p>	<p>업무정지 6개월</p>	<p>지정취소</p>		
<p>9)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법 제17조의5제2항제6호</p>	<p>경고</p>	<p>업무정지 1개월</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개월</p>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2	허가취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3	허가취소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5)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허가취소			
6)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분 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나) 그 밖의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중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1개월	해당 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금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경우 바)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4조 제8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3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6개월
12)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p>15)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p>	<p>호 법 제27조 제2항제7 호</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16)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27조 제2항제8호</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나)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하여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라)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가) 시설·장비의 기준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나) 시설·장비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 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3호라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p>19)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임원 또는 사용자 중 제26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p> <p>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p>	<p>법 제27조 제1항제2호</p>	<p>허가취소</p>			
<p>20) 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p>	<p>법 제27조 제2항 제11호</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p>허가취소</p>	
<p>2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p> <p>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27조 제2항 제12호</p>	<p>경 고</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6개월</p>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2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5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6)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7)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8)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7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30)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법 제27조	허가취소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31) 법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경고	허가취소			

비고

- 6)마)에 대한 1차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의 폐기물"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분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라.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나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법 제46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경우 나) 그 밖에 처리 기준과 방법이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 조 제7항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6 조 제7항				
가) 신고한 폐기물의 재 활용 유형에 따른 용 도 또는 방법을 지키 지 않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 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 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시설폐쇄
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 개월

비고: "처리금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을 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제3호	등록취소			
3)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	법 제27조의2				

경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항제1호				
가) 변경등록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5호				
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의2 제2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의2제8항을 위	법				

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제2항제8호				
가) 등록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장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26조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의2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법 제30조의	지정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7항제2호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2 제7항제4호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법 제30조의2 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할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 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 의 자에게 다시 의뢰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p>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 검사와 사후관 리 정기검사를 연속 하여 수행한 경우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경고</p>	<p>업무 정지 1개월</p>	<p>업무 정지 3개월</p>	<p>업무 정지 6개월</p>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	법 제66조제1			

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제1호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		200	300	500

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200	300	500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2호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	500	7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1호	50	70	100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2호	50	70	100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2	50	70	100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3	50	70	100

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3호	50	70	100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0	700	1,000
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500	700	1,000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500	700	1,000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저.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4호	50	70	100
쳐.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	법 제66조제3항제5호	50	70	100

록한 경우				
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	300	300	300
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1호	100	200	300
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	1,000	1,000	1,000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6호	50	70	100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7호	100	100	100
로.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2호	100	200	3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	500	700	1,000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4호	100	200	300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500	700	1,000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6호	500	700	1,000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제15호	100	200	300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7호	500	700	1,000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제8호	50	70	10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	법 제25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허가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의2호	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7) 2년에 3회 이상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허가 취소			
8)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 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호	경고	허가 취소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 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 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 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 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 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 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	법 제25조제2항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제3호	1월	3월	6월	취소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8)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9) 법 제21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0)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2)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6)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7호	영업정지 1월			
27)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비 고

23)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1 차	2 차	3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승인취소		
4) 2년 동안 3회 이상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7)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3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8)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4호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벌칙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 4. 18.>
13. 삭제 <2017. 4. 18.>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 8. 3.>
 -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 1. 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 12의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 7. 23.>
16. 삭제 <2010. 7. 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 8. 3.>
-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 1. 20.>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 12의5.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 7. 23.>
16. 삭제 <2010. 7. 23.>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 2021. 7. 6.] 제6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 2015. 12. 1.>

1. 삭제 <2013. 6. 12.>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09. 6. 9.]